

통보

다음 고지는 10.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.

1. 통보국가: 튀르키예

해당할 경우,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(3.2 및 7.2):

2. 담당기관(Agency responsible):

산업기술부

EU 및 외교 총국

Mustafa Kemal Mah. Dumlupinar Bulvari Eskişehir Yolu 2151. Cad. No:154 Cankaya - Ankara/ Türkiye

이메일: sumeyye.sabanci@sanayi.gov.tr

3. 조항 2.9.2 [X], 2.10.1 [], 5.6.2 [], 5.7.1 [], 3.2 [], 7.2 [], 기타에 근거해 통보:

4. 해당제품(HS 또는 국정세율 품목. 해당할 경우,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): 입력 전력이 125W~500kW인 모터로 구동되는 팬의 에코디자인 요건

5. 제목(페이지수, 언어, 열람 방법): 입력 전력이 125W~500kW인 모터로 구동되는 팬의 에코디자인 요건에 관한 통보 초안(2024/1834/EU) (SGM-2025/..) (18페이지, 영어)

통보 문서 열람 링크 및/또는 요청 시 사본 제공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:

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TUR/25_06841_00_e.pdf

6. 내용: 본 통보는 입력 전력이 125W~500kW인 모터로 구동되는 팬을 대상으로 하며,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코디자인 규정에 명시된 다른 에너지 관련 제품에 장착된 팬도 포함된다.

이 통보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.

(a) 모터의 자체 냉각만을 목적으로 전기 모터 축에 장착된 팬 임펠러

(b) 최대 전기 입력 전력이 3kW 이하인 세탁기 및 세탁건조기 내에 장착된 팬

(c) 팬에 기인한 총 최대 전기 입력 전력이 280W 미만인 주방용 후드에 장착된 팬

(d) 최고 에너지 효율 지점이 8,000rpm 이상인 팬

(e) 최대 전기 입력 전력이 750W 미만인 제트 팬

3. 본 통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만 작동하도록 명시되어 있고, 그러한 용도에 맞게 특별히 설계되고 판매되는 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(a) 2016년 6월 30일자 공식관보(No. 29758)에 게재된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보호 시스템에 관한 규정(2014/34/EU)에 정의된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의 팬

(b) 2013년 7월 10일자 공식관보(No. 28703)에 게재된 건축 자재 규정(305/2011/EU)에 명시된 화재 안전 요건에 따라, 300°C 이상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단시간 작동이 가능한 긴급용으로만 사용되는 팬

(c) 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 안전 규정에 정의된 원자력 시설 내의 팬

(d) 군사시설(벙커) 및 민방위 시설(방공호) 내의 팬

- (e) 이송되는 가스의 작동 온도가 100°C를 초과하거나 – 40°C 미만, 또는 두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팬
- (f) 팬을 구동하는 모터가 가스 흐름 외부에 위치할 경우, 모터의 주변 운전 공기 온도가 60°C를 초과하거나 –30°C 미만, 또는 두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팬
- (g) 공급 전압이 1,000V AC를 초과하거나 1,500V DC를 초과하는 팬
- (h)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,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유독성, 고부식성 또는 인화성 가스나 증기를 처리하는 팬
- (i) 고체 입자 농도가 10mg/m³ 이상이고, 평균 입자 크기가 최소 0.1mm이며, 모스 경도가 최소 2 이상인 물질을 다루며, 평균 블레이드 각도가 50°~90°인 재료 운반용 팬
- (j) 생물학적 위험 물질을 함유한 가스를 처리하는 팬
- (k) 발암성 또는 돌연변이 유발 물질 작업 시 보건 및 안전 조치 규정에 정의된 발암성 또는 돌연변이 유발 물질이 함유된 가스를 처리하는 팬
- (l) 지정된 압력 및 온도 범위 내에서 반올림한 압축성 계수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1.00이 아닌 가스를 처리하는 팬
- (m) 무선 또는 배터리로 구동되는 팬
- (n) 작동 중 무게를 손으로 지탱하는 휴대용 장비 내의 팬
- (o) 작동 중에 이동하는 수동식 이동 장비 내의 팬
- (p) 공기 순환용 팬

- 7. 적용할 경우,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:** 본 통보의 목적은 최고 에너지 효율 지점에서 전기 입력 전력이 125W~500kW($\geq 125W$ 및 $\leq 500kW$)인 팬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요건을 정의하는 것이다. 여기에는 대통령령 No. 5187(2022-02-04)에 따라 제정된 에너지 관련 제품의 환경적 책임 설계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팬이 다른 제품에 장착된 경우도 포함된다.

본 통보는 유럽연합 법령과의 조화를 위한 것으로,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/125/EC를 이행하고 위원회 규정(EU) No. 327/2011을 폐지하는 2024년 7월 3일자 위원회 규정(EU) No. 2024/1834, 전기 입력 전력이 125W~500kW인 모터로 구동되는 팬의 에코디자인 요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.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, 라벨링, 국제표준과의 조화

8. 관련 문서:

제품안전 및 기술규제법 No. 7223(2020-03-05), 대통령령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 No. 1 조항 388 및 에너지 관련 제품의 환경적 책임 설계 규정

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/125/EC를 이행하고, 위원회 규정(EU) No. 327/2011을 폐지하는 전기 입력 전력이 125W~500kW인 모터로 구동되는 팬의 에코디자인 요건에 관한 위원회 규정(EU) No. 2024/1834(2024-07-03)

9. 채택 예정일: 본 통보는 발행과 동시에 채택된다.

시행 예정일:

- a) 조항 8 및 부칙 조항 1의 제2항은 발행일에 시행된다.
- b) 기타 조항은 2027년 7월 24일에 시행된다.

10. 의견 제출:

의견 마감일: 2025-12-12

[X] 통보일로부터 60일

통보 관련 의견 처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: